



# 공공예남소식

2018년 6월 15일(제429호)

## HAENAM NEWS

### ◆ 군정목표 ◆

힐링시티 해남건설로  
군민행복시대 구현

### ◇ 군정방침 ◇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  
주민감동 1류 복지서비스 증진  
치유여행 1번지 문화관광 육성  
인재육성 1등 교육환경 조성  
창조적인 1품 행정 추진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홍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462 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공고·고시·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 공 고

- ◎ 해남군공고제2018-984호 ----- 1
- ◎ 해남군공고제2018-1073호 ----- 3
- ◎ 해남군공고제2018-1094호 ----- 4

## 사업소

- ◎ 해남군문예체육진흥사업소공고제2018-3호 ----- 8

이  
가

해남군공고제2018-984호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기 같은법 제85조의3(등록 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4일

### 해 남 군 수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2.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처분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주식회사 명진환경건설 (최 * 식)	해남군 해남읍 해리4길 11-1, 2층 (신동백아파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제주서귀포2015-06-0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주기적신고 미이행) -법 폐지전 적용-	2018년 6월 18일 까지 주기적 신고서 제출

3. 처 분 일: 2018. 6. 4.
4. 공고기간: 2018. 6. 4. ~ 2018. 6. 18.(15일간)
5. 근 거: 건설산업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
6.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공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공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통하였습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청 또는 해남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61-530-5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군공고제2018-1073호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3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6. 11.

### 해 남 군 수

####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처분근거 (사 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유)태산건설 (임 * 옥) 214114 - 0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각길 9	석공사업 (해남2008-04-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안2003-10-21)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동일한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2. 공고기간: 2018. 6. 11. ~ 2018. 6. 25.(15일간)

3. 처 분 일: 2018. 6. 11.

4.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3

5. 기타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 등록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공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통하였습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청 또는 해남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61-530-5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남군공고제 2018-1094호

###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해남군 읍내리 50번지 일원에 해남군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 6. 14.

### 해 남 군 수(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해남군 관리계획사업(군계획시설 : 전통시장, 도로(소로 2-25))
  - 명 칭 :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3,229m<sup>2</sup>
  - 건축면적 : 2,321.69m<sup>2</sup>
  - 도로규모 : 길이 28m, 폭 8m, 면적 127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9.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단위:m<sup>2</sup>)

연번	지번		공부면적	편입내역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리	번지		계	시장	도시계획도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4		3365	3356	3229	127					
1	읍내	48	462	462	462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2	읍내	50	550	550	550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3	읍내	88-11	72	72	72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4	읍내	48-1	1	1	1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5	읍내	88-19	4	4	4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6	읍내	29-6	60	60	60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7	읍내	48-2	13	13	13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8	읍내	48-3	9	9	9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9	읍내	29-2	116	116	116		김**	광주광역시 동구 산동 720-26			
10	읍내	29-3	126	126	126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11	읍내	29-4	126	126	126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12	읍내	29-5	129	129	129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13	읍내	29-7	90	90	90		해남군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14	읍내	39	248	248	248		장**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20-4			
15	읍내	38	56	56	56		장**	해남군 남동읍 남동4리			

								읍내길 20-4			
16	읍내	33	335	326	326		장**, 장**	주시광남천 134,201 501선 동원(보물 야타)			
17	읍내	40	248	248	248		장**	해남읍내 20-4			
18	읍내	36	321	321	277	44	해남군	해남읍내 20-4			
19	읍내	35-1	152	152	144	8	이**	해남읍내 19-1			
20	읍내	35-2	20	20	6	14	백**	해남읍내 17			
21	읍내	35-3	53	53	8	45	전**	해남읍내 19			
22	읍내	35-4	46	46	30	16	이**	해남읍내 19-1			
23	읍내	88-1	120	120	120		국(국토 해양부)				
24	읍내	50-5	8	8	8		해남군	해남읍내 20-4			

사 업 소

**해남군문화체육진흥사업소공고제2018-3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군수가 임의 처분”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요시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복사는 복사카드를 따로 제작”을 “복사 및 출력은 사용자 납부 후”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② (생략)</p> <p>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철거된 설비를 7일 이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u>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u></p>	<p>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p>
<p>제19조(운영위원회) ① <u>문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 운영위원회(이하 “문예운영회”라 한다)와 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체육시설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의한 운영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u>운영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제24조(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①</p>	<p>&lt;삭 제&gt;</p>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문화운영회”라 한다)를 두고, 구성인원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문화운영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관외대출) ① 도서자료 관외대출은 제28조의 독서회원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되, 도서를 대출코자 할 경우에는 독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 1. ~ 4. (생략)
- ② (생략)

제30조(이용수수료) ① (생략)

② 열람자료의 복사는 복사카드를 따로 제작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관외대출) ①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이용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복사 및 출력은 사용자 납부 후 -----  
--.

<현행>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내용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 (영화)등	행 사		
문 예 체 육 시 설 관	공 연 장	오전	100,000	200,000	1. 토요일 오후,야간,일요일,공휴일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전시실, 결혼예식은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매시간 초과시마다 조례 제9조제3항 적용 가산 ※ 1일을 1회로 할 경우 야간기준 적용	
		오후	150,000	250,000		
		야간	200,000	300,000		
	전 시 실	1 일	55,000			
	다 목 적 실	결혼예식	1 회	100,000		
		결혼예식 외 사용	오전	60,000		
			오후	80,000		
		야간	100,000			
		생활체육 시 설	1 일	헬스장 25,000		
	문 화 의 집	다목적문화실	1 일	15,000		전시실 면적과 다목적실 면적 비율을 감안 전시실 대관료의 4분의 1 적용
	군민광장 (야외무대 포함)	1 일	1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형	외 제	60,000	조 율 료 본인부담	
		국 산	40,000		
	중 형(국산)		30,000		
무대조명	종합조명		50,000		
	일반조명		30,000		
	효과기(눈,비,구름등)		1 회	30,000	
	드라이아이스		1 회	65,000	
	스모그기기		1 회	20,000	
무대기계	상 부 무 대		1 회	50,000	
	승하강무대(오케스트라리프트)		1 회	30,000	
	덧 마 루		1 회	20,000	
무대음향	마 이 크	유선마이크	1회(3대)	10,000	초과시 대당 5,000
		무선마이크	1회(3대)	15,000	초과시 대당 7,000
	음 향 반 사 판		1 회	50,000	
	녹 음	릴테이프	1 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 회	5,000	
영사설비	영사기(35m/m)		1 회	50,000	
	비디오프로젝트		1 회	20,000	
냉·난방	공 연 장	난방	1시간	51,000	
		냉방	1시간	48,000	
	문 체 관 다목적실	난방	1시간	40,000	
		냉방	1시간	40,000	
	전 시 실	난방	1일	36,000	
		냉방	1일	34,000	

3. 기타 사용료

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영 화 촬 영			1 회	30,000	
중계 방송	TV(비디오 녹화)		1 회	30,000	
	라 디 오		1 회	20,000	

<개정안>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내용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 (영화)등	행 사		
문 예 체 육 시 설 관	공 연 장	오전	100,000	200,000	1. 토요일 오후,야간,일요일,공휴일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전시실, 결혼예식은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매시간 초과시마다 조례 제9조제3항 적용 가산 ※ 1일을 1회로 할 경우 야간기준 적용	
		오후	150,000	250,000		
		야간	200,000	300,000		
	전 시 실	1 일	55,000			
	다 목 적 실	결혼예식	1 회	100,000		
		결혼예식 외 사용	오전	60,000		
			오후	80,000		
	야간		100,000			
	생활체육 시 설	1 일	헬스장 25,000			· 헬스장 이용자중 3개월 이상 장기등록회원에게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신분증을 제시한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 단,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문화 의집	다목적문화실	1 일	15,000		전시실 면적과 다목적실 면적 비율을 감안 전시실 대관료의 4분의 1 적용
	군민광장 (야외무대 포함)	1 일	1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형	외 제	60,000	조 율 료 본인부담	
		국 산	40,000		
	중 형(국산)		30,000		
무대조명	종합조명		50,000		
	일반조명		30,000		
	효과기(눈,비,구름등)		1 회	30,000	
	드라이아이스		1 회	65,000	
	스모그기기		1 회	20,000	
무대기계	상 부 무 대		1 회	50,000	
	승하강무대(오케스트라리프트)		1 회	30,000	
	덧 마 루		1 회	20,000	
무대음향	마 이 크	유선마이크	1회(3대)	10,000	초과시 대당 5,000
		무선마이크	1회(3대)	15,000	초과시 대당 7,000
	음 향 반 사 판		1 회	50,000	
영사설비	비디오프로젝트		1 회	20,000	
냉·난방	공 연 장	난방	1시간	51,000	
		냉방	1시간	48,000	
	문 체 관 다목적실	난방	1시간	40,000	
		냉방	1시간	40,000	
	전 시 실	난방	1일	36,000	
		냉방	1일	34,000	

3. 기타 사용료

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영 화 촬 영			1 회	30,000	
중계 방송	TV(비디오 녹화)		1 회	30,000	
	라 디 오		1 회	20,000	

##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을 “제시”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독서회원의 자격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제시하고, 증명사진 2매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을 “제시하고,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공문, 출장 등으로 독촉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호 중 “도서관”을 “도서관·문화의집”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운영위원회(이하 “문예운영회” 라 한다)와 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체육시설운영회” 라 한다)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1. 각 운영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와 생활체육분야에 관심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문체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p> <p>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회 간사 1명을 두 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p> <p>③ 각 운영회의 회의는 위원장</p>	<p>&lt;삭 제&gt;</p>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  
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문예운영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의 자문 및 협의

2. 다목적실과 전시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체육시설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헬스장 및 에어로빅 운영과  
관련된 사항 자문

2. 그 밖의 생활체육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 자문 및 협의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  
위원회(이하 “문화운영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운영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문화예술 분  
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군

<삭 제>

수가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문화운영회 간사 1명  
을 두되, 문화의 집 업무를 담당  
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문화운영회의 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  
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문화운영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1. 문화의 집 운영 기본계획 수  
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2. 문화강좌 개최에 대한 내용  
협의 및 주민 홍보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이용절차 및 관리) ① (생략)

② 자료를 관외 대출하고자 할 때는 독서회원증을 제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절차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시-----  
-----  
-----  
-----.

③ (생략)

제22조(독서회원 운영)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독서회원의 자격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한다. 단, 초등학교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청서란의 보호자 동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증명사진 2매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의 공부를 확인한다.

③·④ (생략)

제28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 ③ (생략)  
④ 대출자료를 연기 신청 없이 기한 내에 반납치 않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출도서 반납 독촉대장에 기재 후 유선으로 1차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독서회원 운영) ① 독서회원의 자격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② -----  
-----  
----- 제시하고, 별지 제17호서식-----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공문, 출장 등으로 독촉할 수 있다.

⑤ 1차 독촉 후 7일이 경과하여  
 도 반납치 않을 경우 2차 독촉  
 을 하여야 하며, 2차 독촉 후 7  
 일이 경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출장 회수하여야 한  
 다.

제32조(직무) 도서관운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삭 제>

제32조(직무) -----  
 -----.

1. 도서관·문화의집 -----  
 --
2. ~ 4. (현행과 같음)